

<p>議錄 發刊前의 會議錄原稿를 閱覽 또는複寫하고자 하는 申請이 있을 때에는 議長은 이를 許可할 수 있다.</p> <p>②議員이 會議規則 第63條에 規定된 内容이記載된 會議錄原稿를 閱覽하고자 할 때에는 第7條第2項의 規定을, 會議規則 第49條第1項 단서에 规정된 内容이記載된 會議錄原稿를 閱覽·複寫하고자 할 때에는 第6條第2項의 規定을 각각 準用한다.</p> <p>第12條(錄音) ①會議錄作成을 위한 速記業務를 위하여 需要한 때에는 錄音을 할 수 있다.</p> <p>②本會議 錄音을複寫하고자 하는 자는 議長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다만, 錄音複寫는 配付會議錄, 내용에 한하며 發言議員外의 자가 錄音複寫를 하고자 할 때에는 發言議員의 同意를 받아야 한다.</p> <p>第13條(委任規程) 會議錄의 作成方法 등 기타 필요한 細部事項은 事務處長이 따로 정할 수 있다.</p>	<p><b>3. 서울特別市議會에서의證人等費用支給에關한規程案</b></p> <p>(11時 23分)</p> <p>○委員長 金寅東 議事日程 第3項 서울特別市議會에서의證人等費用支給에關한規程案을 上程합니다.</p> <p>(議事権 3打)</p> <p>専門委員의 檢討報告가 있겠습니다.</p> <p>○専門委員 梁在大 다음은 서울特別市議會에서의證人等費用支給에關한規程案에 대한 檢討報告를 드리겠습니다.</p> <hr/> <p>(報告)</p> <p>1. 制定理由</p> <p>서울特別市議會에서의 證人·鑑定人 및 參考人등의 出席에 따른 費用의 支給基準을 規定하는 데 있음.</p>
<p>이 規程은 발령한 날부터 施行한다.</p>	
<p>2. 主要骨子</p>	

  

區 分	主 要 內 容	備 考
費用의 種類 (第2條)	運賃(鐵道·船舶·航空 및 自動車) 現地交通費·宿泊料·食費 및 食卓料	
費用의 支給基準 (第3條)	議會議員報酬等에關한條例 別表1 및 別表2 準用	
費用支給日數의 計算(第4條)	出席한 날로부터 證人으로서 滞在한 日數	
費用支給의 例外 (第5條)	市議會議員·關係公務員·市傘下公社·工團의 任職員	

  

<p>3. 檢討意見</p> <p>○議會에서의 案件審議 또는 行政事務監查 및 調査時 證人·鑑定人·參考人等으로 出席한 경우 旅費 및 手當을 支給하기 위해서 費用支給基準을 定해야 마땅하나, 地方自治法과</p>	<p>關聯條例의 根據 規定이 缺기 때문에 논란의 소지는 있을 수 있다고 思料됨.</p> <p>○하지만, 補償費로써 諸算措置가 수반되어 있고, 案件審議 等과 關聯하여 證人等을 出席시켜 證言·鑑定 또는 陳述을 들어야 할</p>
---	--

경우가 많은 現實로선 費用支給에 관한規程을 制定하는 것은 需要하다고 思料된。

○ 단, 證人등이 虛偽의 陳述이나 鑑定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費用支給을 制限할 수 있는 條項도 마련되어야 한다고 봄.

○ 참고 말씀드리면 國會의 경우 國會法 第129條 및 國會에서의證言·鑑定等에 관한 法律 第11條의 規定에 의하여 全文6條의 “國會에서의 證人등 費用支給에 관한 規則”을 制定·施行하고 있음.

以上으로 檢討報告를 마치겠습니다.

○ 委員長 金寅東 專門委員의 檢討報告가 있었습니다. 質疑와 討論을 하실 委員이 있으시면 質疑·討論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趙文普委員 專門委員의 制定理由와 主要骨子와 檢討意見을 보니까 상당히合理的의이고妥當性이 있다고 생각해서 異議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委員長 金寅東 그러면 質疑·討論이 없으시기 때문에 議事日程 第3項 서울特別市議會에서의證人等費用支給에 관한規程案에 대하여原案대로 可決하고자 하는데 異議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議事棒 3打)

#### (參 照)

##### 서울特別市議會에서의證人等費用支給에 관한規程案

第1條(目的) 이 規定은 서울特別市議會(이하 “의회”라 한다)에서의 證人, 鑑定人 및 參考人(이하 “證人等”이라 한다)에게 지급할 費用의 支給基準을 規定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費用) ① 證人등에 支給하는 費用은 運賃(鐵道, 船舶, 航空 및 自動車), 現地交通費, 宿泊料, 食費 및 食卓料로 한다.

② 第1項의 費用 이외에 鑑定을 위하여 議

會 議長이 특히 需要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鑑定料를 支給할 수 있다.

第3條(費用의 支給基準) 證人等에 대한 費用支給에 관하여는 議會議員報酬等에 관한條例 별표1 및 별표2를 準用한다.

第4條(費用支給日數의 計算) 證人등에 支給하는 費用은 議會 또는 指定된 場所에 出席한 날로부터 證人 등으로서 滞在한 日數에 의하여 이를 算定한다.

第5條(費用支給의例外) 다음 각號의 1에 해당하는 者에게는 費用을 支給하지 아니한다.

1. 市議會議員
2. 所屬機關에서 따로 費用을 지급받는 公務員
3. 市傘下 公社·工團의 任職員

#### 附 則

이 規定은 1992. . 부터 施行한다.

4. 서울特別市行政事務監査 및 調査에 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林東奎議員外 1人 發議)
5. 서울特別市議會議員報酬等에 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林東奎議員外 1人 發議)
6. 서울特別市議會事務處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林東奎議員外 1人 發議)

(11時 27分)

○ 委員長 金寅東 議事日程 第4項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 委員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議事日程 第4項, 5項, 6項은 審查할案件의 내용이 간단하므로 一括上程하여 處理코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서 異議가 없으시면 一括上程해서 處理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그리면 議事日程 第4項 서울特別市行政事務監査 및 調査에 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과 議事日程 第5項 서울特別市議會議員報酬等에 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議事日程 第6項 서울特別市議會事務處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을 一括하여 上程합니